서울특별시 마포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안

의 안 25-121관련 번 호

발의년월일: 2025. 10. 22.

발 의 자: 행정건설위원장

1. 수정이유

마을버스 운송사업자에 관한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환수대상자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제8조 "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제1항에 따른 처우개선비 등을"을 "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처우개선비 등을"로 함

서울특별시 마포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8조 중 "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제1항에 따른 처우개선비 등을"을 "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처우개선비 등을"로 한다.

수정안조문대비표

현	행	개 정 안	수 정 안
- (신	설)	제8조(처우개선비 등 환수)	제8조(처우개선비 등 환수)
		구청장은 마을버스 운송	
		사업자 또는 마을버스 운	
		수종사자가 거짓이나 그	コ
		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	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
		7조제1항에 따른 처우개	3조제1항 및 제7조제1항
		선비 등을 신청 또는 청	에 따른 처우개선비 등을
		구하여 이익을 취득한 경	
		우 관련 법령에 따른 환	
		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	
		한다.	